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청 442- <sup>C</sup>	(전화번호 266-4168)	권(규정)      조항 전결사항
처리기간	83.12.27	구청장	시청장
시행일자	83.12.	전결	결
보존연한			
보조기관	도시정비부장 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계장	고지 119 83.12.30	12.27
기안책임자	김항오 (결남수)		
경유			
수신	국안참조		1983.12.28 통계관
참조			
제목	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정비지구) 지정승인 정정고시		
"제1안,			
수신: 내부절차			
제목: 등 건			
1. 서울특별시고시 제667호 (83.12.13)로 도시계획지정고시 를 용도지구중 주차장정비 지구에 대하여는 부여 의무된 사항이 아니며 서울시 전역을 분청(도시계획과)에서 일괄 조치 되어야 하므로 이를 정정 고시 코제 합니다.			
"제2안,			
수신: 서울특별시청			
참조: 도시계획과장			
제목: 등 건			
1. 도시 442-902 (83.12.22) 호와 관련입니다.			
2. 서울특별시고시 제 667호 (83.12.13)로 지정승인한 도시			

원본은 도시계획과에  
보존되어 있음  
도시계획과장  
김항오

도시계획과장  
김항오

계획 용도 지구중 주차장 정비 지구에 대하여 별첨고시문과 같이 정정  
고시 하였기에 보고 합니다.

첨 부 . 고시문 사본 1부 - 끝 -

"제 3 안,

수 신 : 서울특별시청

참 조 : 문화공보관

제 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 조 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 지구 지적승인  
정정고시 하였기에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. 고시문 사본 1부 끝 -

"제 4 안,

수 신 : 총무처 장관

제 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 조 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 지구 지적승인 정정  
고시 하였기에 관보 게재 의뢰 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고시문 사본 2부 끝 -

"제 5 안,

수 신 : 건설부 장관

참 조 : 도시계획과장

제 목 : 등 권

1 서울특별시 고시 667 호 (1983. 12. 13) 로 도시계획 용도 지구  
고시한 지적승인에 대하여 별첨 고시안과 같이 정정고시 하였기에 보고  
합니다.

첨부: 고시문 및 도면 각 1부

"제 6 안"

수신: 서울특별시

참조: 시민과장

제목: 관인발인 의뢰

1. 도시계획법 제 13 조에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적승인 결정고시  
하였기에 건설부 총무처 공문에 관인발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건설부 총무처 공문 각 1부

"제 7 안"

수신: 수선처 참조

제목: 등 권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44 호 (83. 12. 13) 로 지적승인  
한 도시계획 용도지구에 대하여 별첨 결정고시안과 같이 고시 하였기에  
동보하고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신.

수신처: 도무과, 건축과, 수도관리( ) 세무 1, 2과, 건설과, 공원녹지과, 주택과, 생활2등

"제 8 안"

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용도지구 (고도지구, 주차장 정비지구) 지적승인 결정

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7 호 (83. 12. 13) 로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동법  
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지적승인한 용도지구 중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하여.

정정고시 한다.

2. 관계조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의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 
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3. 12.

서울특별시청

가. 용도지구 지적승인 정정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	비고
최고고도지구	중구 <del>신영동</del> 일대	32,322 m <sup>2</sup>	성곽 높이 이하
주차장 정비지구	중구 전역	10,176,000 m <sup>2</sup>	각 지

※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